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0.

발 의 자 : 김철민 · 김현권 · 전재수
위성곤 · 이개호 · 이수혁
윤영일 · 전현희 · 이찬열
이석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의나 과실 등의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, 영업정지,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,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의 부재로 시정명령,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음.

심각한 부실공사는 건설참여자, 준공 후 사용자(이용자)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사용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위임.

이에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,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(안 제83조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8호의2”를 “제8호의2, 제1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(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,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)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의2, 제3호의2, 제3호의3, 제4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, <u>제8호의2</u> ,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	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8호의2, 제10호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(생략)	1. ~ 13.(현행과 같음)